



보도	2023.9.8.(금) 배포시	배포	2023.9.8.(금)	
담당부서	자금세탁방지실 자금세탁방지검사2팀	책임자 담당자	실장	이재석 (02-3145-7500)
			팀장	김혜선 (02-3145-7495)

## 금감원, 「전자금융업권 대상 AML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3.9.8일(금) 15시,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 을 개최하였음
  - 중·대형 전자금융업자(46개사)의 보고담당 임원 및 책임자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 약 80여명이 참석하였음
- 금번 워크숍은 전자금융업을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의 AML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 최근 실시한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공통 미흡사항 등 전달과 함께
    - \*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23.3월)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22.8월~'23.6월)
  -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음

#### 전자금융업권 AML 내부통제 워크숍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5:00~15:05	[개회사]	금감원 이명순 수석부원장
15:05~15:35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유형 및 대응방안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 주요 AML 내부통제 미흡사항 및 향후 검사방향 - 전자금융업자 특유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15:35~16:05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 고객확인의 실무상 이슈 및 해결전략 -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의 기술적 고도화 방안	
16:05~16:30	질의응답(Q&A) 및 의견·건의사항	

## II 주요 발표 및 논의내용

-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이 고려할 위험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AML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였음
  -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강점인 IT기술 등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자금융업권 고유의 AML 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간 및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
- 주제발표는 ①전자금융업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유형 및 대응방안, ②주요 전자금융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등으로 구성

### 1 전자금융업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유형 및 대응방안

-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공통적인 AML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한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 \* AML 전담조직·인력 부족, 전사적 위험평가 설계·운용 및 독립적 감사 수행 미흡 등
  - 전자금융업 특유의 구조적인 AML 취약점 및 업권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주요 내용]

- ① (체크리스트 배포) 자체점검 및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AML 체크리스트 배포

부문	점검항목 (총 57개)
1. 내부통제	임직원의 역할, AML 전담조직 등 8개 영역 총 28개 점검항목
2. 고객확인	고객확인, 고객공지, 주의의인물 등 5개 영역 총 17개 점검항목
3. STR·CTR	모니터링 체계, 보고체계 수립 등 3개 영역 총 12개 점검항목

② (유형별 대응방안) 전자금융업의 확인된 주요 자금세탁 위험유형에 대해 관련 STR 룰을 마련하여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각 유형별로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

위험유형	대응방안
①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 송금인 정보 수취 관련 은행권과 공조 - '적요'란 활용하여 빈번한 입금대행자에 대한 모니터링 - 금융사기 확인된 고객은 거래거절 조치 검토 등
②가상자산 현금화	- 비정상적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의 정보 및 거래패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수사기관 신고 - 가상자산 관련 종사자 또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빈번히 수행하는 고객은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차등관리 등
③구매행위 가장	- 직업 등에 비추어 과도한 환금성 상품 구매, 가맹점 정보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반복 결제 등 집중 모니터링 - 가맹점 대표자/예금주 정보를 활용하여 허위매출 적발 - 환금성 상품 가맹점의 대표자명, 주소, 거래패턴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 및 강화된 고객확인 검토 등

□ 또한, 전자금융업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 증가를 감안하여 향후 AML 검사확대 및 조치강화 방향을 설명하였음

- 특히, 검사 결과 경영진 약속서 제출 등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 밀착 관리하며, 개선 미흡시 가중조치 예정임을 안내하였음

## 2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 전자금융업자 2개사가 전자금융업 주요 취약부문\* 관련하여 강점인 IT 기술을 활용하여 AML 업무를 고도화한 사례를 공유하였음

\* 비대면 고객확인이 대부분이므로 외국인 고객확인 등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고, 고객관련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의 근거가 부족

- 카카오페이는 OCR(광학문자인식) 및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외국인 고객확인 업무 강화 등 사례
- 네이버파이낸셜은 AI 머신러닝과 NLP(자연어 처리) 등을 활용한 의심거래 모니터링 고도화 등 사례

### 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금일 워크숍은 최초의 전자금융업권 AML 워크숍으로서, 원론적 안내를 넘어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 주요 AML 미흡사항, 자금세탁 위험유형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자금융업권의 AML 이행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및 자율개선 유도를 병행하면서, 전자금융업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AML 역량 강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

※ [별첨]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발언자료 1부

# 「전자금융업권 AML 내부통제 워크숍」 개회사

---

## 개 회 사

2023. 9. 8. (금) 15:00 ~ 15:05 (5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 (9층)

금 용 감 독 원

수석부원장 이 명 순

※ 본 원고는 현장에서의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명순입니다.

오늘 「전자금융업권 AML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전자금융업자 AML 업무담당 임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간편송금, 간편결제, E-커머스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는 편리함과 신속함 등을 강점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자금융업의 거래규모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지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금융업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거래유형을 공유하고 검사결과 파악된 주요 미흡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고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 II 전자금융업의 자금세탁 위험

'19년 7월

전자금융업자에게 처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이래,  
전자금융업은 다양한 모습을 띠며 진화하였고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만큼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과도한 편리함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낳았고,  
핀테크의 혁신성은  
예견하지 못한 위험을 야기했습니다.

실례로,  
최근 전금업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에게 AML 의무가 도입된 지난 4년이  
AML 의무 준수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전자금융업 고유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기반하여  
AML 업무를 고도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Ⅲ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의 의의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려면, 탄탄한 기초가 뒷받침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자금융업자는 전통적 금융회사가 아니고 IT업계나 유통업계에 뿌리를 둔 경우가 많다 보니, 업무경험이나 사례가 많지 않고 인적 여건도 녹록지 않아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업무 수행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회사 경영진의 인식과 굳건한 의지를 기반으로

전사적 위험평가와 독립적 감사 등 AML 내부통제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운영을 통해 미흡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전자금융업자만의 강점인 유연한 조직, 신속한 의사결정, 첨단 IT기술과 결합하여 AML 업무의 선두업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금융업 특유의 AML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은 업무 형태 등에 있어 독특한 특성이 많습니다. 비대면 고객 위주이고 C.I.(연계정보)를 사용합니다. 계좌가 아닌 계정 기반이며 전자금융업자 사이에는 공동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AML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객정보가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타 금융업권에서 사용하는 AML 업무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자금융업에 특유한 자금세탁위험을 사전 탐지하고, 첨단 거래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는 등 전자금융업 고유의 AML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금융업자간 그리고 전자금융업자-감독당국간  
쌍방향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전자금융업자 AML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ML 담당자 협의회'를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전자금융업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좋은 접근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정 이슈에 대한 공유나 건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자금융업권의 AML 역량 제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파도 위에 있습니다.

이 물결 끝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명실공히 디지털 금융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업자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워크숍이  
전자금융업계에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확립에 대한  
활발한 관심이 퍼져나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